

의안번호	제 50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 화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50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(2007. 10. 4)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→ 제44조·제45조·제47조(안 제1조)

「동법시행령」 제19조의4 → 제54조 (안 제1조)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8조 → 제127조 , 제125조 → 제134조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, 제127조, 제134조

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를 “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로, “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3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2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u>제38조·제39조·제41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<u>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44조·제45조·제47조</u> ----- ----- <u>제54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</u>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</u>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----- ----- <u>법 제134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법 제127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4조 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 (임시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7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